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 5. 10 선고 2022나1484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H(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진 담당변호사 유영상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1. C조합

2. D조합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진성

변 론 종 결 2023. 4. 19.

판 결 선 고 2023. 5. 10.

제1 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0가합61132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소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피고 사이에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3. 체결한 각 신탁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E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 5. 8. 접수 제174351호 및 2018. 5. 8. 접수 제1743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내지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4면 9행의 “2016. 12. 27.까지”를 “2017. 1. 6.까지”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4면 14행의 “3억 6,940만 원”을 “3억 6,935만 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5면 6행 첫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신탁법 제8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추가 판단

원고는, E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6. 9. 1.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전체건물인 인천 서구 T 소재 U아파트 중 AI호 및 AJ호를 위 공사대금 채권의 대물변제 내지 담보조로 분양받았는데, E이 위 AI호 및 AJ호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2018. 5. 3. 위 AI호 및 AJ호를 비롯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사해행위 내지 사해신탁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탁법 제8조 소정의 사해신탁의 취소는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과 마찬가지로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이어야 하고,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2236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가 E에 대한 위 A호 및 AJ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서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원고 주장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더라도 참가인들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E이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의 대물변제 내지 담보조로 신탁부동산 중 일부인 위 A호 및 AJ호를 분양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제1심 판결 이유 제3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참가인들은 위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신탁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E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견종철, 판사 이형원, 판사 김은경